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81108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8110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나187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A 담당변호사 최BA)

【피고, 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C 담당변호사 노B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나187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 은행이 소외 박DA과 사이에 판시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박DA이 피고와 사이에 보증기한을 1999. 3. 17.까지, 보증방법을 근보증, 대출과목을 할인어음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 은행에 제출한 사실, 원고 은행이 1998. 3. 20. 박DA으로부터 소외 박DB 발행의 판시 약속어음 2장(각 만기가 1998. 7. 10.과 1998. 8. 10.이다.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액면 상당액을 대출하여 준 사실, 1998. 7. 28.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 사건 어음이 만기에 각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갑제14호증)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은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그 어음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박DA은 원고 은행에 대하여 위 환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어음할인 내지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발행의 신용보증서(갑제1호증)의 신용보증약관이 제13조 제2항에서 보증부대출이 어음할인방식으로 실행된 경우에 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기금에게 당해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어음은 만기에 어음요건을 완비하여 제시되고 그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보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은행의 어음 교부의무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 이행하여야 할 의무일 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위 약관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의 보증책임 이행의무와 원고의 어음 교부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원심의 판단과 같다.

그러나, 피고의 항변의 내용은,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기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은행의

어음 교부의무(권리가 유효하게 보전된 이 사건 어음의 교부의무)가 제권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음이 현저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선이행 관계에 있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임이 명백한바(2000. 8. 9.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의 보증책임 이행의무가 원고의 어음 교부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후이행채무인 원고의 어음 교부의무가 제권판결로 인하여 유효하게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이행의무자인 피고는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후이행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 설시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설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